#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

의안 번호 1721

제출연월일 : 2018. 7. . 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○ 지방재정법 개정(2014.5.28.)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설정 및 연장 하기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○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 (안 제7조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구조문대비표 : 덧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6.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# 7. 입법예고결과

가. 입법예고기간 : 2018년 5월 8일 ~ 5월 18일 (10일간)

나. 의견 내용 : 의견 없음

## 8. 부서협의 결과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 : 해당없음

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 : 의견없음

9. 참고사항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 : 한강유역환경청 재정계획과

#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

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제8조로 하고,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 (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「지방재정법」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환경보호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·성명	환경보호과장 권영대
	팀장 직위·성명	환경관리팀장 유찬주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김예슬 (031-790-5655)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〈신 설〉	제7조 (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 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특별회 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「지 방재정법」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<u>제7조</u> (생략)	<u>제8조</u> (현행 제7조와 같음)

# 관계법령 발췌서

### ■ 지방재정법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- 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4.5.28.〉
-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〈신설 2014.5.28.〉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 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〈신설 2014.5.28.〉